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제공일 : 2017. 3. 7.(화)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	02) 3999-078 010-5231-3588
사무관 박종훈	02) 3999-080 010-6666-9461
성인권정책전문관 목소희	02) 6973-9822 011-434-6196

서울시교육청, 여학생 인권 보장 위해 나서다

초·중·고교에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학생 인권실태의 점검과 개선을 위해 초·중·고교 전체에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 ※ 1975년 UN이 정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촉구하는 날이자 전 세계 여성이 연대하고 기념하는 날
- 안내문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여학생 인권 및 성차별에 해당하는 민원사례를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민원사례와 관련된 권리는 이미 교육부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의 인식부족과 학생의 인권보다 전통과 평판을 중시한 몇몇 학교의 교칙으로 인해 여학생의 권리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담·접수된 여학생 인권 침해 사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 A는 생리통이 심했으나, 생리조퇴를 신청할 수 없었다. A와 친구들은 가정교사로부터 “생리조퇴를 할 거면 생리대를 갈

아서 보건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A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는 것을 택했다.

○ 중학생 B는 교복 때문에 학교와 갈등을 빚었다. 치마를 입기 싫어하는 B가 입학한 학교는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B는 교복문제로 대안학교 진학을 희망하여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 고등학생 C는 추운 겨울만 되면 괴롭다. 생활규정이 엄격한 C의 학교는 무조건 검정구두에 흰 양말을 신어야 한다. 운동화는 정말 추울 때만 한시적으로 학교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디자인으로만 신을 수 있다. 차가운 구두를 신고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면 다칠까봐 불안하다.

○ 남자중학생 D는 수업 중 교사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다. 교사는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 돌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라며 성차별 발언을 하였다.

□ 최근의 사회분위기 변화는 학생들의 권리의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 및 ‘깡창생리대’ 등의 이슈로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의식 변화에서 드러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다.

※ 2016년 C학교, S학교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학교의 문제를 공론화하였음


□ 서울시교육청의 ‘여학생 인권 가이드’는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인 용의복장 제한 규정 개선, △성차별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및 구분 지양,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성별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상담사례, 근거 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바람

-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여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가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별로 인해 권리침해를 경험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권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조희연 교육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와 함께 여학생 인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학교현장에 밀착한 성평등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여학생·남학생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여학생 인권 보장] 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안에서의 여학생 인권실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75년 UN이 정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촉구하는 날이자 전 세계 여성이 연대하고 기념하는 날

여학생 인권 보장, 왜 중요한가요?

-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
 - 성별에 따라 행동을 제한하고 평가하게 되면 성차별 발생
 -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경험보다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경험해야
-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권리의식 수준 향상
 - 여성에 대한 범죄 및 “갈창생리대” 이슈로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차별과 혐오발언에 대한 문제의식 증가

모두를 위한 약속, 여학생 인권 가이드

■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 학생·학부모에 제도 안내하고, 사용 신청 시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주의

■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하여 활용도 제고

■ 성차별적인 용의복장 제한 규정 개선

- 성별에 따른 외모 강요는 불합리한 성차별적 관행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및 구분 지양

- 성역할 분업 지양, 순서 정할 때 성별구분 외의 다양한 방법 활용 등

■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 학생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으며,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주의 바람

■ 성별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 및 개선

- 안정적인 탈의 공간 확보, 책상 가림판 등

[여학생 인권 보장] 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여학생 인권 보장, 왜 중요한가요?

-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
 - 성별에 따라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을 조건으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평가하게 되면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 때문에 제한과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꿈꾸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삶도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권리의식 수준 향상
 - 2015년 발생한 “강남역사건”으로 촉발된 여성인권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깔창생리대”, “문화계 내 성폭력 고발 운동” 등의 여성인권 이슈로 이어져 왔습니다.
 - 학생들은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개진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공통의 관심사에 반응합니다.
 - 학교와 학생이 체감하는 권리의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거듭 반복하면, 결국 그 일이 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거듭 목격하면, 결국 그 일이 정상이 됩니다. 만일 남자들만 계속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 차츰 우리는 남자만 사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획하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요청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한 세상을, 스스로에게 좀 더 진실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진 남자들과 좀 더 행복해진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딸들을 지금과는 다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지금과는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요즘은 할머니가 자라난 시절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책과 법률의 변화 덕분입니다. 그런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태도의 변화, 우리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젠더(성별)가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젠더(성별)가 아니라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1)

모두를 위한 약속, 여학생 인권 가이드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 생리공결제도의 취지와 활용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적극적으로 안내

- 생리공결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음

※ 2016년 한국YMCA가 중·고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를 모른다’에 65.2%(690명)이 응답

※ 2016년 서울시 초·중·고 생리통으로 결석·조퇴한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현황

학교 유형	학교 수	학생수	생리통으로 인한 출결 현황									
			질병 결석		질병 조퇴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		출석으로 처리하는 조퇴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남녀 공학	905	274,173	1,246	0.4	1,143	0.4	8,109	2.8	5,189	1.8	15,687	5.3
여학교	139	102,794	858	0.8	864	0.8	7,501	7.3	5,892	5.7	15,115	14.7

1) 작가의 TED 강연을 옮긴 책 『우리 모두는 페미니스트(성평등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의 일부. 스웨덴에서는 이 책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2학년에게 나눠주어 성평등 교육의 교재로 활용.

- 초경 연령의 하향 추세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도 제도 활용 안내 필요
- 제도의 취지에 맞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 조성 필요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사례]

▷ 생리공결제도가 있으나 폐쇄적인 학교분위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움

○ 생리공결제도(조퇴, 결과 포함) 사용을 신청했을 때,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 제도 오용을 우려한 과도한 확인 절차 과정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음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사례]

▷ 생리대를 교체해서 확인서 발급해주는 보건교사에게 보여주도록 함

▷ 친구가 화장실에 함께 가서 확인하고 오도록 함

○ 생리공결제도 오용 우려에 앞서 생리 중인 학생을 배려해주는 자세 필요

【생리공결제도】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보완할 것”을 권고

| 2006년 교육부는 학생이 월경으로 인해 결석을 할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월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각 학교의 보건실에 충분한 휴식시설을 갖추는 개선방안을 마련

【근거】

| 교육부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4조 2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여학생 여성용품 비치 및 관련 출결석 인정 안내」 (체육건강과-11550(2016.7.11.))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보장

○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고려하여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정비

- 교복의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바지교복 선정 고려

※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치마와 바지 선택권 조항’이 있는 학교 비율은 중학교 73%(281교), 고등학교 59%(189교)

- 바지교복 선택 착용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겨울철 건강 관리 용이 효과 기대
-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입도록 할 경우 성차별적 관행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해야함
- 여학생용 바지교복 선정 시 옷맵시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활용도 제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사례]

- ▷ 치마를 입기 싫어하고 바지를 편해하는데 학교에서 바지교복을 못 입게 하여 학교와 갈등
- ▷ 학교 평판을 이유로 여학생은 아무리 추워도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교칙 있음

【근거】

- | 2000년 교육부 「여학생 교복의 스커트/바지 선택 착용 권장」
- | 2003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여학생 치마교복 의무조항 시정 권고」
- | 서울시교육청 『201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성차별적인 용의복장 제한 규정 개선

- ‘여학생다움’을 강조한 획일적인 두발, 복장 기준의 개선 필요
 - 학생의 용모를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 존중해야함
 - ‘여학생다움’의 강조가 자칫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강요로 이어져 불합리한 성차별적 관행이 될 소지 있음
 -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용의복장 규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함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사례]

- ▷ 구두 착용 강요, 두발에 대해서도 여학생에 더 세분화되고 엄격한 기준 적용
- ▷ 올림머리 한 것을 보고 불량해 보인다고 풀게 했음
- ▷ 숏커트를 하면 교칙에 위배되어 벌점 받음
- ▷ 신발은 검정구두, 양말은 하얀색으로 맞추도록 함
- ▷ 무늬 없는 흰 양말만 신도록 함
- ▷ 교복이 보이지 않아 학교 이미지 나빠진다는 이유로 긴 패딩 점퍼 금지, 그러나 같은 재단의 특목고는 허용

- 용의복장 제한 규정에 따른 별점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 지양
 -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생활지도’ 지향
 -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으로 규정 제·개정

【근거】

- | 국가인권위원회 05진차119·145·204(병합)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안내문」
(민주시민교육과-2866(2015.3.19.))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및 구분 지양

-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존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에 대한 관심 필요

물건 옮기기는 남학생, 꾸미기는 여학생 같은 방식의 성역할 분업 지양
 진로 상담에서 성별을 넘어서는 다양한 자아실현의 가능성 제시
 순서를 정할 경우 성별구분 외의 다양한 방법 활용하기
 출석번호 정하는 방식(성별, 생년월일, 이름 가/나/다 순)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근거】

-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 교사의 성차별적이며 여성 비하적인 언어 표현은 학생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희롱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고 당연시하는 “여자가~”, “남자가~”와 같은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함
 -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은 성별규범을 내포하고 있으며 당사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함

- 학생을 대상화하여 성적 행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함

- 성차별적이며 여성 비하적인 언어 표현 사용은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주의 바람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과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차별 및 혐오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의식 제고 필요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사례】

- ▷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 돌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라며 차별적 발언함
- ▷ “엉덩이가 쳐졌다, 불쌍하게 생겼다, 줄리게 생겼다.”며 외모비하 발언함
- ▷ 학교에서 똥똥하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살 빼라.”는 소리를 듣는데, 남학생한테는 그런 말 안함
- ▷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학교 규정과 달리, 한 교사는 “여자는 꾸며야 한다.”며 외모평가를 많이 함
- ▷ 복장지도 하면서 “성인 알바 하러 다니냐?”고 함
- ▷ 화장한 학생에게 “남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부모등골 빼먹는다.”며 모욕적 발언함
- ▷ 화장을 진하게 한 학생에게 “짜 보인다.”고 함
- ▷ 한 학생을 “미쓰○”라고 지칭하며, “젊었으면 사귀었을 텐데”라는 발언함
- ▷ 학생 각각에게 “○○녀”라고 지칭함
- ▷ 교사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시집을 잘 간다.”,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크게 웃는다.” 등의 성차별적인 말을 함

【근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16-신청-059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침해의 건 (권고 2016-11)」

성별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 및 개선

-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의견 수렴

- 및 제도 도입 예정이며, 학교 차원에서도 시설 개선 시 참고 바람
-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편안한 자세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 가림판 지원을 고려
 - ➔ 필요성에 대해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 지원 예정
 -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탈의 공간 마련을 위해 실태 점검 및 계획 수립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 사례]

- ▷ 여학생이 교실에서 체육복을 먼저 갈아입다보니 남학생들은 갈아입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업에 늦어 벌점을 받는 악순환 발생
- ▷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불쑥 들어와 서로 당황했었음

【근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